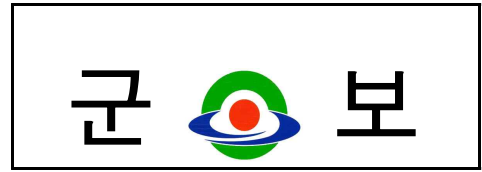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52호 2023. 6. 19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「예천 예누리길 조성공사」 편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3-886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

예천군에서 시행하는 「예천 예누리길 조성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9조,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,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19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 업 명 : 예천예누리길 조성공사
- 나. 위 치 :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-1번지 일원
- 다. 사업 면적 : 29,312㎡
- 라. 사업 기간 : 2019 ~ 2024년
- 마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
2. 토지 출입 내용

- 가. 출입사유 : 지적분할측량, 감정평가 등
- 나. 출입할 토지 : 「불입」 토지조서 참조
- 다. 출입기한 : 2023. 6. 19. ~ 사업종료시 까지

3. 보상계획 및 열람

- 가. 보상대상 : 불입 토지조서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
- 나. 토지 및 물건조서 : 열람장소에 비치하며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
- 다. 열람기간 : 2023. 6. 19. ~ 7. 3.(14일간)
- 라. 열람장소 : 예천군청 2층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(☎054-650-6866)
- 마. 이의신청 방법 :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(불입양식)

4. 보상시기 :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가격의 결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·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)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합니다.
- 나.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(예천군)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→보상액산정→보상협의요청→협의(계약체결)
- 라.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내역,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.

6. 보상금 지급

- 가.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“예천군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 - 단,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(근저당권, 가압류 등)는 해지 후 계약체결
- 나. 지급방법 : 현금 지급(계좌 입금)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: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

8. 기타사항

- 가.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나.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라.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(수량)이 변동(편입 제외 포함)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(☎054-650-686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토지조서 1부(별첨).
2. 물건조서 1부(별첨). 끝.